

제297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정관 변경 보고

2020. 9. 8.



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

1. 변경사유

-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-8949(2020. 7. 22.) 내용과 관련된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 변경 등 일부 개정에 따라 임원 및 이사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반영 요구
 - 제명 변경: ‘노동자이사제’ → ‘노동이사제’
 - 명칭 변경: ‘노동자이사’ → ‘노동이사’
-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‘이사회 안건 제출권’, ‘정보 열람권’ 반영

2. 주요내용

- 조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3조①항, 제14조③항, 제15조⑤항)
 - ‘노동자 이사’를 ‘노동이사’로 변경
- 노동이사의 ‘이사회 안건 제출권’, ‘정보열람권’ 반영(안 제14조③)

3. 부 칙

- 시행일: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정관 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임원)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원장, <u>노동자 이사</u> 포함) 감사 2인 원장 1인 <u>노동자 이사</u> 1인 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~ ② (생략) ③ <u>노동자 이사</u>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 ④ (생략)</p> <p>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④ (생략) ⑤ <u>노동자 이사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자 이사</u>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<u>노동자 이사</u>의 임기와 관계없이 <u>노동자 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	<p>제13조(임원)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원장, <u>노동이사</u> 포함) 감사 2인 원장 1인 <u>노동이사</u> 1인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노동이사</u>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 <u>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안전을 제출할 수 있고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노동이사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노동자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<u>노동이사</u>의 임기와 관계없이 <u>노동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